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등〉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22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	3
2.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에 대한 과태료 상향	8
※ 참고자료	15
1. 안전성조사 개요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진욱의원 등 24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

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개정안은 ①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생략) <u><신설></u>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 -----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⑤ 제1항 및 제2항----- --절차와 제4항----- -----

현행	개정안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u>공표할 수 있다</u> . ②·③ (생략)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 ----- <u>공표하여야 한다</u> . ②·③ (현행과 같음)

안전성조사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을 수거해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임.

[최근 5년간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전성조사 (A)	2,780	3,014	2,450	2,337	2,350
리콜 조치 현황 (리콜 명령 건수) (B)	187	169	129	122	130
비율 (B/A, %)	6.73	5.61	5.27	5.22	5.53

주: 리콜 명령은 안전성 조사일 기준으로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행법 제6조¹⁾는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밖에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²⁾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전성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사전적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성조사의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

-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 ④ (생략)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으로, 불법 어린이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현행법에서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안전성조사가 가능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② 현재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수 공표하고, 표시사항이 미비한 제품 등은 공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조치 권고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데, 모든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를 의무화하는 경우 표시사항 미비 제품에 대한 공표도 의무화되어 업계 부담 및 행정력 소모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현행법은 ①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판매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³⁾,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하거나 수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⁴⁾).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6. ~ 11. (생략)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 22. (생략)

② (생략)

2.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개정안은 안전인증표시·안전확인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1항·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3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7. ~ 11. (생략) ③·④ (생략)	<u>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u> 4.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7. ~ 11.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사업자⁵⁾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⁶⁾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⁷⁾·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⁸⁾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⁹⁾,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그런데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안전인증등의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등 적발현황]

(단위 : 건)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안전인증표시 없는 어린이제품 판매·수입·진열·보관	3	4	2	1	3
안전확인표시 없는 어린이제품 판매·수입·진열·보관	21	35	100	117	38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없는 어린이제품 판매·수입·진열·보관	22	26	45	64	88
합 계	46	65	147	182	47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11)에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호법의 침해의 중대성과 과태료 조항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등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에 대한 과태료 상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안전인증등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자에 대한 제재 처분 현황]

법률	구분	제재 처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국내 어린이제품 제조·유통기업이 대부분 영세기업¹²⁾인 점,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준수 의무가 없어 국내 사업자에

12) 2022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90.8%에 달함.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향 등 규제 대신 온·오프라인 교육, 캠페인 등의 계도를 통한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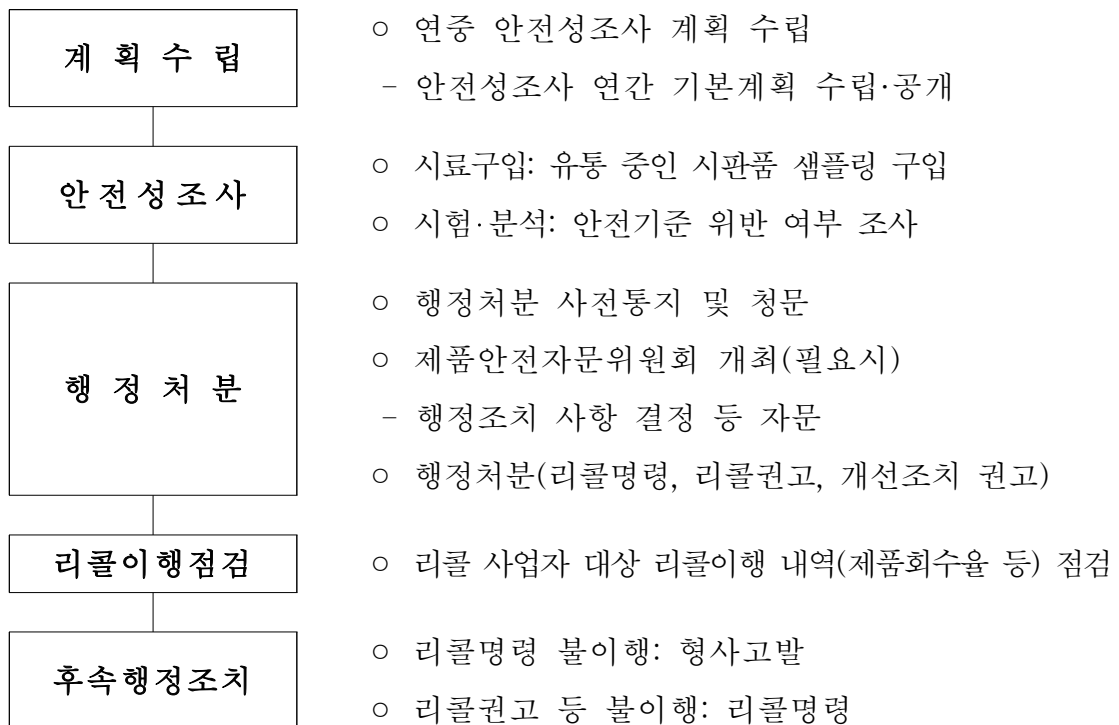
※ 참고자료

1. 안전성조사 개요

□ 개요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제품인증을 받을 당시 품질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제품 안전성조사**”를 정기적 실시 (어린이제품안전법 제6조)
- *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일반적인 제품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가능
-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조치** (어린이제품안전법 제9조 및 제10조)
- * 제품과 관련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검사 또는 평가
- **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1조에 따른 수거등(리콜)의 권고 및 명령 가능
- *** 리콜 : 제품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불, 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및 그 밖의 필요조치

□ 제품 안전성조사 절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